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발간등록번호

11-1790365-000024-01

2023. 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관계기관 합동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CONTENTS



I. 개요	1
II.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법률 등에 따른 처리	3
III. 공공기관 업무유형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8
1. 감사업무 관련 사항	8
2. 공직선거 관련 사항	16
3. 수사업무 관련 사항	21
4. 행정조사 관련 사항	27
IV. 활용안내	3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35

I . 개요

1 추진배경

- ▶ **(적법성 확보)** 감사, 조사 등의 공공분야 업무 수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법성 확보
- ▶ **(능률성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조사 등의 복잡한 업무의 능률성 확보
- ▶ **(권익 침해 예방)**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법치행정 보장

개인정보보호 원칙준수 미흡 사례

-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외부활동 내용을 요구하여, 감사대상 기간 전의 기록까지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수집원칙 위반 소지
- 공직선거 운동 시 선거문자를 발송한데 대해 출처 통지를 요구하였으나 출처 통지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출처 통지제도 규정 위반 소지

2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 ▶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 ②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 포함) 선거, ③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군수사기관 포함)에 의한 수사, ④ 행정조사 등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처리 절차·방법 등
- ▶ **(적용대상)** 감사·선거·수사 및 행정조사 등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개인정보 취급자 등
 - 그 외의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원칙(3~7면) 참고 가능

3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법령 현황

	분야	법령	가이드라인 상 약칭	주요내용	소관기관
1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법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	감사	감사원법	-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감사원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장의 자격, 자체감사 종류 및 감사 절차 등을 규정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6	공직 선거	공직선거법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 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7		공직선거관리규칙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8	수사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재판 등의 형사절차를 규율	법무부
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	법무부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찰청
1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법무부
1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	경찰청
13	행정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국무조정실

※ 붙임 : 관련 법령 주요 내용

II .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법률 등에 따른 처리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도출되며(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원칙(공통사항)

- ▶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보호법 제3조)
- **(수집·이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 내에서 이용 가능 (보호법 제15조)
-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보호법 제16조)

- **(목적 외 이용·제공)**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호법 제18조, 제59조),

* 감사, 수사, 선거, 사회보장, 행정조사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에서 처리되어야 함

-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이 감사·조사 등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관보 등 게재)**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18조 제4항),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정조사기관 등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보호법 제18조 제5항)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법령에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처리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근거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 (보호법 제23조·제24조·제24조의2)

- **(파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보호법 제21조)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고정형 및 이동형 여부에 따라 설치 목적 제한, 촬영사실 안내,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고정형 기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법이 정한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고, 목욕탕·탈의실 등에 설치하는 금지됨 (보호법 제25조)

- **(이동형 기기)** 법령 등에 따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목욕탕·탈의실 등에서 촬영이 금지되며,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함 (보호법 제25조의2)
-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며,
 -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보호법 제28조)
-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함 (보호법 제29조)
 -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
 -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이행, 암호화 기술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상태 유지 등을 이행해야 함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
- **(공공기관 준수사항)**
 - **(파일등록)** 개인정보 파일 운용 시, 개인정보위에 등록해야 함
 - 단, 범죄 수사 등의 경우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보호법 제32조)
 - **(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 운용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함 (보호법 제33조)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의 파일등록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권리보장)**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해당 요구에 따라야 함 (보호법 제35조~제38조)

-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거나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의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3 개별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따른 처리

➡ 감사원법, 경찰법,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률(예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공정위는 공공감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공정위 방문기록 중 방문자의 소속, 방문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방문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176, '20.5.25.)

▶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III. 공공기관 업무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1 감사업무 관련 사항 <감사원법, 공공감사법 등>

- 감사기구는 감사 업무 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란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 과정

1 감시계획 수립

➡ (감사계획 수립) 감사기구는 감사기구별 감사의 목적·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사계획 수립 (공공감사법 제19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

-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의 목적·종류·대상·인원 및 기간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 수집할 자료의 범위나 종류 등을 정해야 함

* 처리 목적 명확화,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을 고려한 안전조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

※ 감사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사정변경 등으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감사 범위와 목적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함
-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구성원 등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 감사기구는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목적과 감사 범위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 수집할 개인정보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정 (보호법 제3조)
-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 법령 근거 확인 (보호법 제23조·제24조·제24조의2)

2 감시 실시

➤ **(자료수집)** 감사기구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 수집 시 당초 계획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

- 개별·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수립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더라도 개인정보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유의

*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법 제27조)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공공감사법 제20조)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시, 감사목적 및 범위 등과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감사목적, 감사대상자, 대상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제출하도록 요구

➤ **(감사목적 외 이용금지)** 감사기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감사목적으로만 처리해야 하므로,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감사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감사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감사의 기본원칙과 감사범위 및 목적

- **(감사원법)** 감사원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사원법 제27조)
- **(공공감사법)**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제출받은 정보나 자료를 감사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음 (공공감사법 제20조)

-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등)**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 감사 담당자 등이 개인정보를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고,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보호법 제29조 등)

3 감시종료

- **(수사기관 제공)**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고발 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공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
- **(개인정보 파기)** 감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감사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함 (보호법 제21조)
- **(감사 결과 공개 등)** 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시 공개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홍길동씨(00기관, 35세)’ 등의 개인정보는 ‘갑씨’ 등과 같이 익명처리 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

감사결과 공개 관련 규정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공공감사법)**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후관리

- ▶ **(감사정보 공유 등)**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 공유, 중복감사 방지 등을 위해 **감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관리하고,
 - 공유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 감사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 전보·퇴직 등으로 감사활동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이 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 관리를 하며,
 - 접속기록 점검·관리 등으로 이상행위 탐지 등의 관리를 해야 함

참고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₁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여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고자 하는데 조치해야 할 사항은?

A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1항은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₂

공공기관이 감사 시, 감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자문을 위해 해당 감사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A

공공감사법 제27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법은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규정 등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감사 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취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등을 하여야 합니다.

Q3

공공감사법 제20조(자료 제출 요구)를 근거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해도 될까요?

A

보호법 제23조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20조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 노조회비 원천징수 업무의 적정성 감사, 장애인 수당 지급 업무의 적정성 감사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감정보를 공공감사법 제20조를 근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5-36호

결정례 ▶ 감사원의 타 기관 감사를 위한 대한항공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대한항공은 감사원의 타 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원법」 제50조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50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률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7-016호

결정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성남시개발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관련 자체감사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기재된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수집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필수적이고 이외 다른 수단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며, 그리고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3-244호

결정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에는 개인의 불법행위 조사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본건 송수신기록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건 **송수신기록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건 송수신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건 이메일 내용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열람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본건 이메일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11-19호

판례 ▶ 자체감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시흥경찰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2015. 9. 1. 이후 시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주차장 내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근무태만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의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첩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태만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 외의 사용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시흥경찰서 B파출소가 위 청문감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37672 판결

2 <공직선거 관련 사항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선거운동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

1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 ▶ **(정당의 추천)**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7장(분쟁조정), 제8장(단체소송)이 적용되지 아니함 (보호법 제58조)
- 이 경우 정당은 선거 입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고,
 -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등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해야 함 (보호법 제58조)

2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교부

- ▶ **(명부작성)**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선거인 명부(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를 작성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3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구·시·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37조)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명부열람)** 구·시·군의 장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중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40조)

▶ **(명부교부)**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제46조)

- 교부된 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능 (공직선거법 제256조)

▶ **(후보자 등록 및 공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병역·세금,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공직선거법 제4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3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할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보호법 제3조)

공직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교부)	공직선거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보호법 제71조)

▶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보호법 제3조)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보호법 제3조)

▶ **(권리보장)** 선거운동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보호법 제3조)

-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보호법 제3조)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해야 함(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 개인정보 침해신고 ☎118

4 선거실시 및 선거범죄 조시

▶ **(투표)**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 (공직선거법 제157조)

- **(사전투표)**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며,

- 중앙선관위는 신분증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158조)

▶ **(선거범죄 조사)** 각급 선관위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혐의 관련, 관계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 각급 선관위 직원은 정보통신망·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예시) 통합 명부 시스템, 선거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5면 참고)

참고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

지자체 장이 지자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외국인 등의 명부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A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인명부의 작성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한 사항을 명부 작성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7항)

Q2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택배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A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유권자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택배사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택배와 무관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대한항공은 감사원의 타 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원법」 제50조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50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률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7-016호

3 수사업무 관련 사항 <형사소송법, 형사절차전자화법 등>

-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1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 일반

🔍 (개요) 수사기관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인지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 판단 및 구체적 단서에 따른 범죄혐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함

* 현행법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수사기관 인지, 신문·방송보도·풍설 등

** 고소·고발, 자수, 진정·탄원·투서, 범죄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보호법 요건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 권리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법령(예시)

-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등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2 개인정보 처리 및 권리보장

▶ **(임의수사 원칙)** 수사요건을 갖추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임의수사를 우선으로 하되,

- 동의를 없더라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 등 목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정황이 있고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 중인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집

▶ **(강제수사)** 강제수사 시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 사건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USB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등으로 함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가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해야 함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 **(수사서류 열람·복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중인 사건의 본인 진술 및 제출한 서류,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등

▶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등)**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수사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고,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보호법 제29조 등)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보호법 제18조, 제59조)

▶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송부해야 함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등)

▶ **(개인정보 파기)**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 종결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검찰청법, 검찰사무규칙,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등 다른 법령에 보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보존기한이 도래한 후 파기해야 함

* (예시)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i)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ii)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경우에는 5년, iii) 법정형 장기 2년 미만의 경우 6개월의 보존 기간 후 수사경력자료 삭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록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검찰청법 등 형사 관련 법률이 공공기록물법에 우선 적용됨

4 비밀누설 금지 등

- ▶ **(비밀누설 금지)** 합법적인 권한에 따른 수사라도 피의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보호법 제3조, 제59조)

주요 법령의 비밀누설 금지 관계 조항	주요 내용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등 금지
• 형실호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수사자료표의 누설 또는 목적 외 이용 금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규정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보호 노력

- ▶ **(정보주체에 통지)** 법원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 검사·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참고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

형사절차전자화법은 '제14조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 금지)'와 위반 시 '제15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A

형사사법정보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결정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사기관 내사(입건 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수사기관의 내사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소명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12-024호

결정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22-043호

판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누설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갑과 을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갑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갑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판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신자료 제공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례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목적은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4 행정조사 관련 사항 <행정조사기본법 등>

◇ 침해·부과·급부행정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의 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1 조사원칙

➤ **(기본원칙)**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참고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근거)** 원칙적으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 근거, 목적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 행정조사운영계획에 따른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수집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함 (보호법 제3조)

▶ **(공동 조사 등)** 동일 행정기관의 2개 이상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에 관해 행정조사를 하거나

-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건설사업장관리, 유해·위험물질 관리 분야 등 행정조사기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2 개인정보 수집

▶ **(일반적 근거)** 행정조사 관련 일반적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없으나,

- 행정조사가 법령 등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없이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예시)** 지자체의 화재·홍수 등 재해대책 수립·이행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자체는 재해 대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개별 법령 근거)** 행정조사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가능 (보호법 제15조)

※ **(예시)**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독립유공자법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관련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3)

➡ 따라서,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 **(협조조사)** 자발적 협조에 따라 행정조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를 받을 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보호법 제15조)

※ ① 동의여부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② 동의 내용이 구체적·명확해야 하며, ③ 동의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3 제3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 행정조사와 무관한 제3자가 행정조사 중인 행정청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 오히려, 보호법은 제18조를 위반하여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 (보호법 제71조)

- ▶ **(예외적 개인정보 제공)** 행정조사의 근거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가능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공받을 수 있음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행정조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관보 등 게재)**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정조사기관 등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함

4 보호조치 및 피기 등

▶ **(보호조치)**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현장조사 중에 영치한 자료는 행정조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3~7면 참고)

참고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

행정조사 시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A

행정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결정례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고용보험 가입 직종·업종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3항 ➡ 제141조 제5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호 ➡ 117조 제6호로 이동('19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9-211호

결정례 양구군 양구군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렌터카업체로부터 해당 불법투기자의 설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양구군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민원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화면에서 확보한 렌터카 이용 불법투기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렌터카 업체에 차량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본 건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이용자와 과태료/범칙금 처리 목적으로 관련 공공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으나, 본 건 쓰레기 불법 투기는 렌터카 운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위 동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시·군·구 등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 필요할 때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건 렌터카 업체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1-002호

결정례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교육청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시에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는 관할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업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나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청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9-132호

결정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도핑검사 관리와 제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며, 스테로이드 등 금지 약물의 거래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막대한 도핑 검사 비용을 감안할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하다. 또한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자 등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에 대한 정보만 제공받고 선수들은 도핑으로 인한 자격정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 수사 시 수집한 관련 증거를 통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1-003호

결정례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이하 '진화위'라 한다)에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원아대장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중략)

경기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공한 날짜,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의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중략) 과거사정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기도는 진화위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19-038호

IV. 활용안내

1.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중 감사, 공직선거, 수사, 행정조사를 수행 시에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함
2.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법령 질의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관계 법령	관계부처	부서	연락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감사원법	감사원	법무담당관	02-2011-2281
공공감사법		공공감사정책과	02-2011-2101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법무담당관	02-2011-2281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3294-8400
공직선거관리규칙			
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형사절차전자화법		검찰과	02-2110-4210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법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정		정보관리과	02-3150-1430
행정조사가본법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31

3. 이 가이드라인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질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자료 - 자료보기 - 지침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감사업무 시 유의사항



- 감사기구는 감사계획과 개별·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감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감사 목적으로만 처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감사원법 제27조, 공공감사법 제20조)

공직선거 시 유의사항



-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 각급 선관위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계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수사업무 시 유의사항



-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15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수사 종결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 보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보존기한 후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행정조사 시 유의사항



- 행정조사 수행이 **법령 등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개인정보 수집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상**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 강구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